

2023.07.19

2024년 최저임금 안내

1. 2024년 최저임금 결정



시간급 최저임금 : 9,860원 (2023년 대비 2.5% 인상)

일급: 78,880원(1일 8시간)

월급: 2,060,740원(1주 40시간, 주휴포함)

역대 가장 긴 최저임금 의결회의 끝에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뉴스레터를 통해 **2024년도 최저임금의 시급단위와 월급단위 계산, 최저임금 산입범위 이슈** 등에 대하여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2.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원)	월 최저임금(원)	인상률(%)
2020	8,590	1,795,310	2.87
2021	8,720	1,822,480	1.5
2022	9,160	1,914,440	5.1
2023	9,620	2,010,580	5.02
2024	9,860	2,060,740	2.5

3. 최저임금 위반의 효과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아울러,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노동부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 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정된당 연도의 최저임금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제11조)

- 최저임금액:시급 9,860원 / 월급 2,060,740원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없음
-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
- 최저임금 효력 발생일: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동법 제31조 제1항)

4. 2024년 최저임금 계산 예시

(1) 월급제 근로자

월~금(주5일),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 (월209시간, 주휴시간 포함)이 됩니다.

(2)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수습 근로자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서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제외)

이에 따라 3개월 동안 수습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급은 **1,854,666(원)**이 됩니다.

(3) 시급제 근로자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9,860원에 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 때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계산 편의상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는 경우 최저시급은 **11,832(원)**이 됩니다.

5. 최저임금 산입범위

2018년 개정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에 따라 '복리후생 성격의 금품'과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최저임금 산입 시 제외되는 범위]	연도	복리후생적 금품	정기상여금
	2020	5%	20%
	2021	3%	15%
	2022	2%	10%
	2023	1%	5%
	2024년 이후	0%	0%

주목할 점은 2023년까지는 복리후생적 금품과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금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제외되었으나, **2024년 이후부터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즉, 2024년 이후부터는 복리후생적 임금과 정기상여금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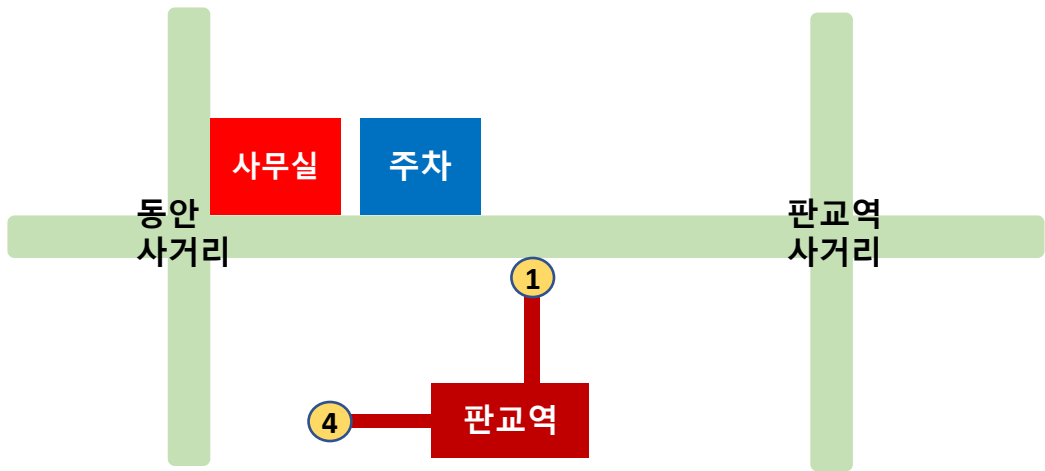
6.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따른 2024년 계산 예시

2023년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식대 등 복리후생적 금품의 경우 최저임금의 1%,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의 5%가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이후부터는 전액이 포함**되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임금구성	실 지급액	2023년 최저임금 산입	2024년 최저임금 산입
기본급	1,800,000원	1,800,000원	1,800,000원
식대	200,000원	179,895원	200,000원(전액)
상여금(매월지급)	100,000원	0원	100,000원(전액)
총액	2,100,000원	1,979,895원 → 최저임금 위반	2,100,000원 → 최저임금 위반 X

따라서 2024년부터는 **산입범위를 고려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별도로 계산하지 않아도**,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2,060,740(원)만 넘는 것이 확인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되는 점에 실무상 의의가 있겠습니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78, 801호 (삼평동, 서건타워)

주차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06번길 31 (삼평동, 호반메트로큐브)

지하철 : 신분당선 판교역(판교테크노밸리) 1번 출구로 나와서 도보 10분 거리

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또는 의견은 당 노무법인이나 소속 공인노무사의 공식적인 검토의견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또는 소속 공인노무사의 공식적인 검토의견이나 자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우측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관련하여 회원사가 아닌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담 월~금 09:00~18:00
방문상담은 사전예약 필수

전화 031-704-1223
팩스 031-8016-3498

양재모 대표 공인노무사
cpla21@hanmail.net

김재연 공인노무사
cplaeony@naver.com

황금별 공인노무사
golds628@naver.com

이정빈 공인노무사
cplaleebin@naver.com